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독립·군립 자연공원 관리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삼척시, 인제군, 정선군, 양양군

내 용

1. 자연공원 관리 부적정

「자연공원법」 제9조¹⁸²⁾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 시·도에 독립공원위원회를,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독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부지면적 7,500㎡(공원자연보존지구는 5,000㎡)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

182) 「자연공원법」 제9조제2항 독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독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

치변경 하는 경우, 공원시설중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km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현황조사,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폐기물 배출분석,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에 관한 평가를 하여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자연생태계·자연자원·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토지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 보전·관리계획, 용도지구별 보전·관리계획,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지역사회 협력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지정대장, 공원계획대장,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되는 공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원대장에는 공원구역의 경계, 행정구역의 명칭, 공원계획의 내용,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해야 하고, 공원관리대장에는 공원사업시행·공원 시설관리·행위허가(협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의 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원대장에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미수립(삼척시, 인제군, 정선군)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부지면적 7,500㎡(공원자연보존지구는 5,000㎡)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와 공원시

설중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km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삼척시 ○○○○과는 2005. 5. 2. ○○○○○공원계획 수립(삼척시 고시 제 ○○○○-○○호) 이후 11년 4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공원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인제군 ○○○○과는 1990. 3. 22. ○○○○○공원 지정 이후 26년 6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공원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정선군 ○○○○과는 2011. 9. 30. ○○○○○공원 지정 이후 5년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공원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② 공원대장 작성·보관 소홀(삼척시, 인제군, 정선군)

삼척시 ○○○○과는 ○○○○○공원에 대한 공원지정대장, 공원계획대장,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되는 공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았고,

인제군 ○○○○과는 ○○○○○공원에 대한 공원지정대장, 공원계획대장,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되는 공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았으며,

정선군 ○○○○○과는 ○○○○○공원에 대한 공원지정대장, 공원계획대장,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되는 공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③ 자연자원조사 미 실시(삼척시, 인제군)

삼척시 ○○○○과는 ○○○○○공원이 1996. 10. 25. 지정된 후 자연자원의 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원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하나, ○○공원 지정 후 19년 11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공원에 대한 자연자원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제군 ○○○○○과는 ○○○○○공원이 1990. 3. 22. 지정된 후 자연자원의 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원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하나, ○○공원 지정 후 26년 6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공원에 대한 자연자원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④ 군립공원위원회 미구성(인제군, 정선군)

인제군 ○○○○○과는 1990. 3. 22. ○○○○○공원이 지정된 후 「인제군 립공원 관리 조례」¹⁸³⁾제7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26년 6개월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군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을 할 경우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군립공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공원 지정 등 3건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 및 변경하였다.

〈○○○○○공원계획 및 변경 현황〉

구분	일자	면적	변경내용																			
지정	1990.03.22	3.982km ²	○○○○○공원 지정 고시(3.982km ²)																			
변경	1992.03.11	3.982km ²	○○○○○공원계획 결정 고시																			
	1997.05.12	3.160km ²	○○○○○공원계획 구역변경 및 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	취락지구	61,420	63,130	1,710	집단시설지구	85,130	64,680	△20,450	자연환경지구	2,800,296	1,996,767	△803,529	자연보전지구	1,035,000	1,035,000	-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																
			취락지구	61,420	63,130	1,710																
			집단시설지구	85,130	64,680	△20,450																
자연환경지구	2,800,296	1,996,767	△803,529																			
자연보전지구	1,035,000	1,035,000	-																			
※ ○○공원 지정시 필지별 면적착오 및 취락지구의 합리적 조정																						

정선군 ○○○○○과는 2011. 9. 30. ○○○○○공원이 지정된 후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¹⁸⁴⁾제4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3년

183) 강원도 인제군 조례 제1545호, 1996. 12. 26. 제정(인제군공고 제166호)

경과한 2014. 10. 27. 군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을 할 경우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군립공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공원 지정 시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하였다.

〈병방산군립공원계획 현황〉

구분	일자	면적	변경내용
지정	2011.09.30	0.488km ²	○○○○○공원 지정 고시(0.488km ²)

2. 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미이행(양양군)

「자연공원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하고, 이를 보전·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연공원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 시행허가,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위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양군 ○○○○사업소는 ○○○○공원 내 양양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에 ○○○이 4개동의 불법 건축물을 축조(합계 47.61m², 4동, 일반음식점)한 사실을 적발하여 「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184) 강원도 정선군 조례 제2241호, 2011. 3. 2. 제정

법률」, 「건축법」에 따라 고발(2016. 4. 12.) 조치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을 2차례(2015. 11. 19., 2015. 12. 8.)에 걸쳐 통지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나 대집행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양양군 ○○면 ○○리 ○○-○번지 외 4필지에 ○○○가 3개동의 불법 건축물을 축조(합계 46.94㎡, 3동, 창고·보일러실 등)한 사실을 적발하여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라 고발(2015. 12. 10.) 조치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2015. 10. 15.)을 통지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나 대집행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양양군 ○○면 ○○리 산○-○○번지 외 13필지에 ○○○가 불법으로 야영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합계 463.35㎡, 34동, 방갈로·화장실·샤워장·매점)한 사실을 적발하여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2015. 5. 28) 조치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을 2차례(2014. 12. 5., 2015. 1. 20.)에 걸쳐 통지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나 대집행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양양군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에 ○○○가 불법으로 화장실 2동을 조성(합계 28㎡, 2동, 화장실)한 사실을 적발하여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2015. 5. 28) 조치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을 2차례(2014. 12. 5., 2015. 1. 20.)에 걸쳐 통지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나 대집행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양양군 ○○면 ○○리 ○○○-○번지 외 20필지에 ○○○가 야영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합계 459.54㎡, 39동, 방갈로·화장실·샤워장·편의점·식수대)한 사실을 적발하여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2015. 5. 28.) 조치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을 2차례(2014. 12. 22., 2015. 2. 12.)에 걸쳐 통지하였으나, 감사일 현재 까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나 대집행을 이행하지 않았다.

〈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현황〉

행위자	행위위치	불법건축물 면적(㎡)	동수	발생일/ 고발일	처분결과/ 일시	행정대집행 여부	비고
○○○	강원도 ○○군 ○○면 ○○○리 ○○-○번지 외1필지	47.61	4동	‘15.3./ ‘16.4.12.	구약식/ ‘16.6.29.	미실시	미계고
○○○	강원도 ○○군 ○○면 ○○리○○-○번지 외4필지	46.94	3동	‘14.4./ ‘15.12.10.	구약식/ ‘16.2.29.	미실시	미계고
○○○	강원도 ○○군 ○○면 ○○리 산○-○○번지 외13필지	463.35	캠핑장	‘05.경./ ‘15.5.28.	공소권없음 /‘15.12.10.	미실시	미계고
○○○	강원도 ○○군 ○○면 ○○리 산○-○번지 외1필지	28	2동	‘14.경./ ‘15.5.28.	구약식/ 15.10.26.	미실시	미계고
○○○	강원도 ○○군 ○○면 ○○리 ○○○-○외 20필지	459.54	캠핑장	‘90.경./ ‘15.5.28.	공소권없음 /‘15.10.26.	미실시	미계고

조치할 사항 삼척시장, 인제군수, 정선군수, 양양군수는

-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연공원의 보전·관리계획 수립, 공원대장 작성·보관, 자연 자원조사 실시,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자연공원 내 불법 시설물을 적의 조치하여 자연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